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837 취득세등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가 2021. 6. 18. 원고에게 한 취득세 68,242,490원, 지방교육세 1,351,350원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7. 5. 8.부터 모친 소유의 ○○ ○○○구 소재 아파트(이하 '○○ 아파트'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모친과 함께 살다가 2019. 11.경 혼인하였고, 혼인한 후에도 ○○ 아파트에서 위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모친, 배우자, 딸과 함께 살았다.

나. 원고는 ○○으로 이사 갈 것을 계획하고 2021. 4. 6. ○○시 ○○○구 D,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1. 5. 31.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다음날인 2021. 6. 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1세대가 9억 원 이상 1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 40,500,000원(3%), 지방교육세 4,050,000원(0.3%), 농어촌특별세 2,700,000원(0.2%)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법무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21. 5. 31. 현재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모친이 ○○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2021. 6. 4. 그 중과세율을 전제로 한 세액과 기 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취득세 68,917,490원, 지방교육세 1,364,840원, 농어촌특별세 5,405,400원의 합계 75,687,730원(가산세포함)을 납부하였다.

---

1) 원고는 소장에 거부처분일자를 2021. 6. 17.로 기재하였으나 그에 관한 증거가 없는 반면, 조세심판결정문에는 처분일자가 2021. 6. 18.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바. 원고는 2021. 6. 11. 위 추가 납부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6. 1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 아파트에서 모친과 같이 살 때에도 모친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원고와 모친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 간 바로 다음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모친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므로, 원고와 모친이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21. 5. 31. 단 하루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을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1세대의 기준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납세의무를 확장한 것이어서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1세대'의 판단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만 들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나 세대 분리를 위한 취득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그다음 날 그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일에 원고와 모친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어 있었던 이상, 그들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말하는 1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이하 '피고의 해석'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21. 12.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판단

1)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A)'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B)'이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있는 사람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전입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위 A와 B를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해석'이라 한다).

가) 세대의 기준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2020. 8. 12. 신설된 것으로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령 개정 이유).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세대원 중 한 명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그 즉시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 동기에서 투기적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석에 의하는 것만으로도 위 입법목적이 달성된다. 반면에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위 입법목적 달성을 넘어서까지 1세대 2주택 취득에 관한 중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결과가 된다.

나) 피고의 해석에 의하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전거(轉居)일 전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전거 후에 위 전입신고를 하였는지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데[2], 그와 같은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것 역시 위헌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석에 따를 때에만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헌적 부분이 제거된다.

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2) 만일 원고가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취득일 전에 실제로는 살지도 않는 제3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모친과 세대를 분리해두었다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 취득→전거→전입신고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실제와 다른 외양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이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여, 전거로 인한 전입신고 의무기간을 전거일 당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거 이후 처리하여야 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전거일 당일이나 그 직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시간적·사회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14일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이 사건 해석이 의도하는 바와 이익 상황이 유사하다.

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경우'로 제4호를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제4호를 신설한 이유는 "주택 취득세 중과 시 세대기준 합리화: 자녀 등 세대원이 분가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로 전입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653호)].[3][4] 이는 쟁점 규정의 문언 해석에 따를 경우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제거한 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그다음 날 모친의 주민등록표에서 분리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주민등록을 전출할 수가 없는데 중과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위장전입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것이냐"라는 원고의 말마따나,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 또는 그 후에 이사를 하게 되므로, 취득일 전에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 전 조항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된다.

4) 참고로 공고 당시의 개정안은 제28조의3 제3항으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주택취득일에 세대가 분리된 것으로 본다."를 신설하는 것이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1-27

다. 취소의 범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 68,917,490원, 지방교육세 1,364,840원, 농어촌특별세 5,405,400원의 합계 75,687,730원(가산세포함)의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위법하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68,242,490원, 지방교육세 1,351,350원의 경정을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